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김상훈 · 김승수
진종오 · 김은혜 · 우재준
이종배 · 김선교 · 박충권
김예지 · 안상훈 · 강대식
백종헌 · 김기현 · 조정태
김미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, 중상해,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.

특히 미성년자·무면허자의 운전, 2인 탑승,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,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 주변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·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3, 제160조의2 및 제161조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
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1. 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지역
2.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
3. 공원 및 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
4.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
고 인정되는 지역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
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구간의 위치·범위 및
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0조의2(과태료) 제13조의3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
또는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
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”를
“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0조의2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
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60조의2의 과태료: 시·도경찰청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3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</u> <u>행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</u> <u>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</u> <u>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</u> <u>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1. 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</u> <u>주변 지역</u> <u>2. 어린이 · 노인 · 장애인 보호</u> <u>구역</u> <u>3. 공원 및 관광지 등 보행자</u> <u>밀집지역</u> <u>4.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</u> <u>현저하거나 보행자 보호가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</u> <u>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</u> <u>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</u> <u>장은 해당 지역 또는 구간의</u> <u>위치 · 범위 및 기간을 미리 공</u>

<u><신 설></u>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<u>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·징수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략)	<u>고하여야 한다.</u> <u>제160조의2(과태료) 제13조의3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 또는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<u>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0조의2의</u>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·징수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제160조의2의 과태료: 시·도경찰청장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